

기업지배구조 헌장

전 문

주식회사 엠씨넥스(이하 “회사”)는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의 리더를 목표로 한다. 회사는 지속적인 기업 가치 창출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여 균형 있는 지배구조 체제를 운영한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 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고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발전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 (이사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중요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의 구성 및 이사 선임)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사의 운영)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 ④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모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보상)

-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12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상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 등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제13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 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 ⑤ 회사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5조 (공시)

-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②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 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